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5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나2571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53 판결

전문

원고A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변론 종결 2020. 9. 17.

판결 선고 2020. 10.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6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 B으로부터 '베트남 호치민에 카페, 사무실 등(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6. 3.부터 2015. 12. 18.까지 피고 B 및 위 피고의 처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장 창업비용 등으로 총 217,161,8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 설립 비용으로 50,000,000원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67,161,800원(= 217,161,800원 - 50,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부당이득하였다.

나.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였음에도 이 사건 매장 창업비용이 217,161,8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50,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 167,161,8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베트남화 8,000만 동(한화 약 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63,161,800원(= 167,161,8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5.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 등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15. 6. 3.부터 2015. 12. 18.까지 피고들 명의 계좌나 피고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총 217,161,8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포기한 사실은 갑 제2~5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24. 피고 B에게 "기계 값 8,000만 동 영수함. B사장(피고 B)하고 돈 관계는 모든 것 끝났음. 기계값 *1) 모든 것을 정산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자필로 작성해 준 사실, 그 무렵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위 8,000만 동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가 베트남에서의 사업 진행을 포기한 이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기존 금전관계에 관한 정산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 을 제1~5, 7~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자료(갑 제2호증)에 이 사건 매장의 개점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매장의 설립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 철거 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일부 돈을 송금하였음을 근거로 위 피고를 상대로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이 원고가 송금한 돈의 지출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167,161,8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오

판사이정현

판사김준영

1) 식별이 불가능한 글자이다.